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5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구자근 · 박수영
이종욱 · 정희용 · 김상훈
최은석 · 박대출 · 이철규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은 기업·대학·연구소·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·교육·문화 등의 정주(定住)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.

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, 국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.

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이전한 공

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,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의3 신설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1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협의) ①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협의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1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정원</u> <u>감축 협의) ① 「혁신도시 조</u> <u>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</u> <u>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</u> <u>관인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3</u> <u>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 본사</u> <u>또는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</u> <u>행을 위한 조직의 정원을 감축</u> <u>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</u> <u>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</u> <u>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</u> <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